

한국균학회 운영위원회 규정(2012. 10. 11. 개정)

제1조 (설치근거 및 목적) 본 학회 회칙 제7장 제27조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기획 수행하고,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및 위원 선출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재무간사 1인, 사업간사 1인, 해외간사 1인, 학술정보간사 2인, 편집간사 15인, 기금간사 1인, 균학용어심의간사 1인 등 당연직 위원 29인과 회장이 위촉한 3인 등 총 35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
제3조 (임무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할 수 있다.

1. 예산, 결산, 재산사항,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정관 변경,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3. 임원의 추천,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회,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위원회의 규정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
제4조 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
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.

제6조 (보고) 위원회는 사업업무, 예산 및 결산을 감사의 감사결과와 함께 이사회,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7조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